

勞動關係法 改正에 따르는 「有害, 危險作業場」의 勤勞時間基準 및 範圍

成 石 炳

〈가톨릭中央醫療院 企劃室〉

1. 序 言

우리나라 勞動法에서는 「有害危險作業場」에서의 勤勞時間基準을 一般性作業場과는 달리 規定하고 있고 有害危險作業場의 範圍에 關해서도 明示하여 特別保護를 하고 있다.

從前에는 勤勞基準法에 이에 關한 規定을 두고 施行하여 왔었으나 今年初(1990. 1. 13)에 産業安全保健法을 大幅 改正하게 되면서 이 法에 有害危險作業場에서의 「勤勞時間延長의 制限」에 對한 規定을 新設하고 이 規定의 制限을 받는 作業의 適用範圍를 이 法 施行令에서 定하였으며 따라서 勤勞基準法에 이와 關聯된 條項을 削除하였다.

從前에 勤勞基準法에서의 有害危險作業場 勤勞時間基準의 適用을 받는 有害危險作業의 範圍中에는 「라듐 放射線, X線, 其地の 有害放射線을 取扱하는 作業」이 包含되어 있어서 病院에 있어서는 「X線 取扱 部署」의 有害作業場 與否를 두고 學者나 專門家들도 意見을 달리하고 있으며 더구나 主務行政官廳에서도 이에 對한 明確한 有權解釋이 不充分하여 勞使間에 意見對立은 勿論 紛糾의 要因이 되어 오고 있었다.

특히 1987年 後半期부터 病院마다 勞動組合이

設立됨에 따라 團體交涉에서 X線取扱部署를 有害作業場으로 認定하고 勤勞時間基準의 短縮과 延長勤務手當 또는 有害危險手當等 支給을 要求하므로서 勞使間의 意見對立을 더욱 深化시키고 있는 事實이 오늘날 病院들이 안고있는 共通의 問題點의 하나로 指摘되고 있다.

이러한 問題中에서 이번 産業安全保健法의 改正에서 勤勞時間의 制限을 받는 作業의 範圍를 同法施行令에 明文化하므로서 有害危險作業場의 勤勞時間短縮에 對한 異論은 없다고 하겠으나 또한 同法施行令에 이 法改正으로 從前의 勤勞條件低下는 禁止한다는 經過規定을 두었기 때문에 이 規定의 施行에 있어서 亦是 問題點이 殘存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有害危險作業場의 勤勞時間基準이 從前의 勤勞基準法에 依한 變更內容과 産業安全保健法에 依한 變更內容을 具體的으로 說明하오니 病院勞務管理에 參考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 勤勞基準法에 依한 變更

從前勤勞基準法 第43條에 “地下作業 其地 大統領令으로 定한 有害危險作業에 있어서의 勤勞時間은 1日에 6時間, 1週日에 36時間을 基準으로 한다.”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얻은 경우에는 1日 2時間以內, 1週日 12時間以內의 限度로 延長할 수 있다”라고 但書 規定을 두고 있었으나 1989. 3. 29 이法 改正法에서는 “1日에 6時間, 1週日에 34時間을 超過할 수 없다”라고 그 基準을 短縮하였음(但書規定은 같음) 이 경우 같은 法 第42條의 規定과 같이 經過措置를 두어 “300人 未滿의 事業 또는 事業場中 勞動部長官이 指定하는 業種에 對하여는 1991年 3月 31日까지 其外의 事業 또는 事業場에 對하여는 1990年 9月 30日까지 35時間으로 한다”는 猶豫期間을 認定하였음.

3. 産業安全保健法에 依한 變更

1) 延長勤勞의 制限

1990. 1. 13(法律 第422號) 改正 産業安全保健法 第46條에서는 勤勞時間延長의 制限 規定을 新設하여 “事業主는 有害 또는 危險한 作業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作業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對하여는 1日 6時間, 1週 34時間을 超過하여 勤勞하여서는 아니된다”고 規定함으로써 勤勞基準法 第43條와 같은 內容의 基準을 堅持하면서도 延長 勤勞를 할 수 있는 例外를 認定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同法 附則 第6條 3項에서는 勤勞基準法 第43條와 改正法 附則 第3條, 第2項과 經過措置 등을 削除하였다.

2) 制限對象 作業

同法 第46條에 의하여 勤勞時間의 制限을 받는 作業은 同法施行令(1990. 7. 14 公布, 大統領令 第13,053號) 第33條에서 “潛函, 潛水, 作業等 高氣壓에서 行하는 作業을 말한다”고 規定함으로써 그 對象을 極히 縮小하였다(註. 여기에서 “潛函”이라 함은 Caisson : 橋脚等 工事때 물속에서 사람이 作業할 수 있도록 쇠 또는 콘크리트로 만든 밀바닥이 없는 큰 箱子를 뜻함). 그리고 同條 第2項에서는 “潛函, 潛水, 作業時間, 加壓, 加壓方法等 當該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을 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은 勤勞部令으로 定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改正法은 從前 勤勞基準法 第43條 規定에 비추어 볼때 施行上 問題點이 생길 수 있어 同條 第3項에서는 다음과 같은 注意規定을 두어 強調하고 있다.

事業主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有害, 危險 作業에 대하여는 勤勞者의 健康保護을 위하여 法 第23條 및 法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有害, 危險 豫防措置外에 作業과 休息의 適正한 配分 其他 勤勞時間과 關聯된 勤勞條件의 改善을 通하여 勤勞者의 健康保護를 위하여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坑內에서 行하는 作業

2. 多量의 高熱物體를 取級하는 作業과 顯著히 덥고 뜨거운 場所에서 行하는 作業

3. 多量의 低溫物體를 取級하는 作業과 顯著히 춥고 차가운 場所에서 行하는 作業

4. 라듐放射線, 엑스線, 其地 有害放射線을 取級하는 作業

5. 유리, 土石, 鑛物의 粉塵이 顯著히 飛散하는 場所에서 行하는 作業

6. 強烈한 騒音을 發하는 場所에서 行하는 作業

7. 鑿岩機 等에 의하여 身體에 強烈한 振動을 주는 作業

8. 人力에 의하여 重量物을 取級하는 作業.

9. 鉛, 水銀, 크롬, 망간, 카드뮴等의 重金屬 또는 二硫化 炭素, 有機溶劑 其地 勤勞部令이 定하는 特定化合物質의 粉塵, 蒸氣 또는 가스를 顯著히 發散하는 場所에서 行하는 作業

3) 例外措置와 經過規定

그럼에도 不拘하고 從前 勤勞基準法 第43條를 基準으로 勤勞時間을 管理하던 有害, 危險 作業場에서는 混亂을 가져올 念慮가 있다. 그래서 同施行令 附則 6條(有害, 危險 作業에 대한 勤勞時間 短縮에 따른 經過措置)를 두어 “法 第46條 및 이 令 第33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이 令 第33條 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作業中 從前의 勤勞基準法 第43條 및 同法施行令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1日 勤勞時間 6時間으로 制限하고 있거나 1日 6時間을 超過하는 勤勞時間에 대하여 勤勞基準法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賃金を 支給하고 있거나 有害, 危險 作業 關聯手當을 支給하고 있는 作業의 경우에 法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有害 危險 豫防措置를 完了할 때까지는 法 第46條 및 이 令 第33條의 規定을 理由로 勤勞時間, 諸手當等 賃金의 支給과 關聯하여 從前의 勤勞條件을 低下시켜서는 아니된다”는 規定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은 法 第23條 및 第24條의 措置完了 基準과 時點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데 대한 疑問과 混同可能性이 있다고 할 것이다.